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도6377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혜겸(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 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 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판결 참조).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판결,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2)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은 ○○대학교, 공소외 2는 △△대학교의 각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이 그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각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 2.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탄 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제1항에서 본 위 각 무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각 무고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부분 각 공소사실과 그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